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 진 영

●법률 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를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관 장 진 영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관 장 문 성 혁

●법률 제175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중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